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542

제출년월일 : 2023년 2월 6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서울시는 융·복합 기술, 정보통신(ICT),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'12. 9월부터 「서울창업성장센터」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

○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'23. 3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,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신성장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, 기술사업화 및 연구개발(R&D), 글로벌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,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개요

시 설 명	서울창업성장센터
소 재 지	서울 성북구 화랑로 14길5(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내)
시설규모	연면적 1,251㎡
시설용도	창업지원시설(입주공간 20개실, 네트워킹 공간 등)

나. 사업개요

○ 위탁사무 :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

○ 위탁기간 : 1년 8개월 (’23. 5. ~ ’24.12.)

○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
○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○ 소요예산 : 585백만원 (’23. 5. ~ ’23.12.)

다.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○ 추진경위

- 2012. 7. : 제238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
- 2014. 6. : 제253회 정례회 재계약 보고
- 2017.11. : 제277회 정례회 재계약 보고
- 2020. 9. : 제297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
- 2022.11. :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
- 2023. 1. :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(적정)

○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창업성장센터는 융·복합 기술, 정보통신,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발굴·육성, 기술교류 및 사업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첨단산업 분야 기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음

- 특히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육성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은 물론,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다양한 창업주체와의 협력으로 급변하는 창업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이 필요한 사무임
- 이에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서울형 창업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

라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○ 입주기업 모집, 선발, 계약 등 관리 및 운영
- 입주기업 심사·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
-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·운영

○ 기술교류 및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
- 기술창업 컨설팅, 기술이전 후속 R&D 프로그램 등 운영

○ 글로벌 진출 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
- 벤처투자자(VC), 액셀러레이터(ACC) 등을 통한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
- 글로벌 진출 및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

○ 서울창업성장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
-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총괄 등(안전점검, 보안관리 등)
-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을 위한 설비 구매 및 시설정비

○ 기타 위·수탁사무와 관련 "위탁자"와 "수탁자"가 협의한 사항

마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'23. 1. 17.) 심의 결과 : **적정**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

> **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> 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>
>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>
>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「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」

> **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**
>
>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민간위탁금 편성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창업정책과 동북권창업팀　임재선 (☎ 2133-4880)
김고은 (☎ 2133-4883)